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37

2009년 2월 24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월 21일 이주수 의원 외 9인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29일
 다.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09년 2월 24일 상정)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이주수 의원)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해외에 불법으로 반출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의 되찾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2008년 12월 15일부로 구성하였음.
- 동 위원회는 2009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은제 라마탑형 사리구」와 캘럼비아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자경전진작정례의궤」, 「진찬의궤(순조29년작)」, 「진찬의궤(고종29년작)」 등을 되찾기 위해 위원장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의 반환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해외 도처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의 의궤를 되찾기 위한 활동 전반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2008년 12월 15일 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변경함.

- 나. 명칭변경에 따라 활동범위는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있는 '의궤'반환"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윤병국)

 겸토요지

- 본 안건은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명칭으로 인하여 활동범위가 마치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것만으로 한정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명칭변경을 제안하였음.
- "의궤"란 조선시대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일종의 행사보고서로써 기록문화의 꽃이라 여겨지는 주요 문화재인 바, 현재 일본, 영국, 미국,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먼저,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활동범위는 구성결의시 함께 의결되는 것으로 이를 따로 분리하여 위원회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설치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 제안되어 있는 의안의 제목이 "명칭변경안"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의 "명칭"변경에는 "활동목적과 활동범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바, "명칭변경안"의 의미는 "명칭 및 활동범위 변경안"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다수 의견).

- 특별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되어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능률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반환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 의궤반환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이 확대되는 것이나, 활동목적이 확대되더라도 당초 “의궤반환”이라고 하는 활동목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본 변경안의 제안취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짐.
 - 따라서 제출된 의안의 경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확대된 활동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범위를 지정하는 동 결의안의 주문 중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를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의궤”로 변경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위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문”이라 되어 있는 결의문 제목을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문”으로 변경하며, 결의문 내용 중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를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의궤”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더불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의궤”란 조선시대 왕실과 국가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일종의 행사보고서로써 기록문화의 꽃이라 여겨지는 주요 문화재인 바, 현재 일본, 영국, 미국,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별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되어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능률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반환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 “의궤”반환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이 확대되는 것이므로 본 변경안의 제안취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짐.
- 다만,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활동범위는 구성결의시 함께 의결되는 것으로 이를 따로 분리하여 위원회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설치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 제안되어 있는 의안의 제목이 “명칭변경안”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의 “명칭”변경에는 “활동목적과 활동범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바, “명칭변경안”的 의미는 “명칭 및 활동범위 변경안”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제출된 의안의 경우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확대된 활동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범위를 지정하는 동 결의안의 주문 중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를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 의궤”로 변경하며, 결의문 중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는 의궤”를 “해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조 의궤”로 더불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제석위원 8명)
 7. 소수 의견의 요지 : 특별위원회 명칭과 활동목적은 구성결의안을 의결할 때 확정되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목적을 확대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남(홍광식 의원).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